

해양조사기술경력증

발급기관명

유 의 사 항

1.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,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.
2.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양도·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3.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4.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변경사항 및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
- 발급번호:
- 성 명:
- 생년월일:
- 현 주 소:

사 진

(3.5cm×4.5cm)
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인

▶ 기술자격

종목 및 등급	합격일	등록번호

▶ 학 력

기간	학교명	학과(전공)	학위

